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0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이성윤·양부남·강준현

정동영 · 김영환 · 이기헌

한준호 • 박희승 • 서미화

정일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 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 하기 위한 교통시설에만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94조원으로 광주와 대전 1.8조원, 울산, 대전 1.03조원 보다 과다하여 도시간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동법이 제정된 이래 교통환경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역을 본법에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대하고, 도민의 교통편의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지역 균형발전 으로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규정에 포함시킴(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함께 고려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간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 나.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3조의2제5항의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광역교통비율"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간 통행량을 전국 광역 총통행량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 5. "광역교통량"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 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

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간 통행량을 의미한다.

제3조제1항 중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이 경으로 정하는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기준 및 지역 간 균형지표를 고려하여"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자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제1조(목적)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해결함으로써 지역		
<u>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간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		
목적으로 한다.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u>「지방자치</u>	1. "대도시권"이란 <u>다음 각 목</u>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에 따른 지역</u>		
<u>특별시·광역시</u>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		
	광역시 · 특별자치도의 도		
	청 소재지인 도시		
	나.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3조의2제5항의 교통격차		
	를 줄이기 위한 지역으로		
	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지역</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 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 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

- 4. "광역교통비율"이란 「지방 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 광역시, 도, 특 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 시와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 에 있는 지역간 통행량을 전 국 광역 총통행량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 5. "광역교통량"이란 「지방자 치법 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특별시ㆍ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와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간 통행량을 의미한 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기준 및 지역 간 균형지표를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신 설>

<u>장 • 도지사</u>	또는	특별자	치도지
<u>사</u>			
	_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한다.